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전부개정 2026. 6. 9. 규칙 제16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교육연구원은 교육 연구 지원, 교육 현장과의 연계 지원 및 교수, 현장교사, 예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연구원 산하의 교원전문성지원센터, 문해력지원센터 및 학술연구사업 운영을 임무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기구) 교육연구원에는 교원전문성지원센터, 문해력지원센터, 충청교육연구소·과학교육연구소·자율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직제) ① 교육연구원에는 교육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직원 및 조교을 두며,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원전문성지원센터, 문해력지원센터에는 전담교수(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센터장을 두지 않을 경우 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에는 각 연구소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소장을 두지 않을 경우 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 센터장,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및 업무) 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사전문성 개발, 기타 교육발전에 필요한 연구 지원
2. 교육 현장 지원 사업
3. 실행 연구 기획 및 공모 추진
4. 교내 학술지 발행 사업 및 등재학술지 추진
5. 각종 연구대회,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워크숍, 공모전, 포럼, 심포지엄의 개최
6. 예비교사의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용지원, 이러닝지원, 교수학습지원
7. 교수 및 현장교사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 지원,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 초기 문해력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8. 교원전문성지원센터,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연구소의 등록 및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지원 시설 및 설비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항
11. 기록물관리 및 일반사무

제6조(연구원) ① 교육연구원 사업을 위해 교수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술연구교수는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정되어 학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치된 사람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전임연구원은 박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별도의 공모방식에 따라 선발하고, 원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⑤ 겸임연구원은 타 대학 및 초·중·고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학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학부생 혹은 학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연구수행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소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교육연구원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원전문성지원센터장, 문해력지원센터장, 충청교육연구소장, 과학교육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 주제 선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원 산하의 센터와 연구소 활동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원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연구소

제12조(기능) ①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연구원 산하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시행세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제5장 교원전문성지원센터

제13조(기능) ① 교원전문성지원센터는 교육연구원 사업 중 교수, 재학생 및 현장교사의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운영을 전담한다.

② 교원전문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역량·수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임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교수의 강의·교육콘텐츠 제작 및 원격강의 지원
4. 미래교육센터 시설 운영·관리
5. 기타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원전문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교원전문성지원센터에 교원전문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의 수립
2. 센터 발전방안 논의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문해력지원센터

제15조(기능) ① 문해력지원센터는 현장 교사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문해력지원센터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초기 문해력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훈련 지원
2. 초기 문해력 교육 저널 발간 업무
3. 읽기 따라잡기 교사와 교사 리더의 전문성 개발 관리 지원
4. 초기 문해력 교육을 위한 교사 리더 양성 과정 지원

③ 문해력지원센터는 현장교사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연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제16조(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문해력지원센터에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문해력지원센터장, 교육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기획처장, 기초학력과 문해력 전공 주임

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및 운영방안 수립
2. 발전방안 논의
3. 읽기 따라잡기 교사 및 교사 리더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해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제1691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